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93호

사당동 192-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'사당동 192-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'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사당동 192-1번지 일대 신남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사당동 192-1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5,806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12개월 이내
- 나. 준공 예정일 :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 합 명 칭: 사당동 192-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사당로2가길 131 신남성연립 관리동

5. 변경사항

- 가. 조합원 변경
- 나. 임원 변경
- 다. 조합설립 동의율 변경
- 라. 조합원 대지지분 변경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-94호

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2015.04.02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2018.04.30. 사업시행계획인가, 2022.12.19.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372호(2024.08.0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06호(2025.11.06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·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-121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40,493.50㎡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오형진)
- 마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, 301호
- 바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사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04.30.
- 아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: 2026.06.30.
- 자. 변경사유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
- 차. 변경내용